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및 대응전략

2024. 4. 3.(수)

울산지역본부
산업안전부장 정희재

저를 소개합니다.

- ❖ 안전보건공단 울산본부 산업안전부장[2023. 1. 9.~]
- ❖ [PSM + 산업안전 + 자체 안전관리] 13년, [본부 미디어, 교육] 9년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위한 공단 자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자격 : 산업안전지도사[화공안전], 가스기술사 등

* 문의 E-mail : hjjeong@kosha.or.kr

들어가며

사업안전관리 노고 치하

- 무재해 사업장 지속 유지 노력 -

목차



1.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2.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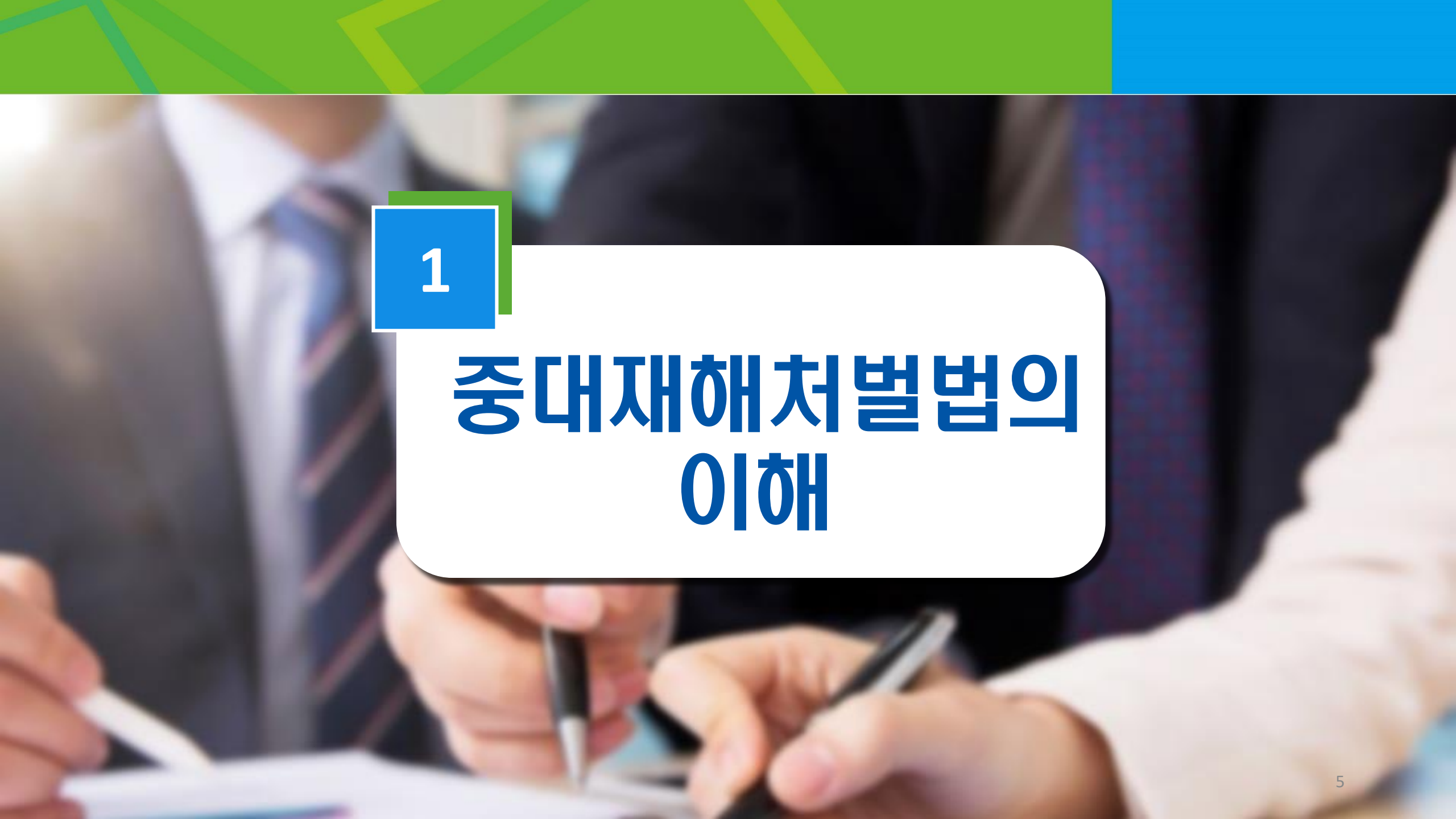
3.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례



4. 처벌사례



5. 안전관리 대응전략

The background of the slide features a blurred image of several people in business attire, including suits and ties, who appear to be in a meeting or collaborative work environment. They are holding pens and looking at documents.

1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등에 **관리 책임**을 묻는 법

법 제정
(시행령 제정)

2021년 1월26일
(2021년 10월5일)

법 시행

2022년 1월27일

법 시행한지 2년 경과

법 적용확대
(5인-49인)

2024년 1월27일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정의 【중대법 제2조(정의) 관련】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❶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 ❷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 ❸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환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중대재해의 범위)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정의 【중대법 제2조(정의) 관련】

“중대시민재해”란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해당여부 확인

우리 공단은 공중
이용시설에 해당
되어 중대시민재해
예방 조치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패러다임 전환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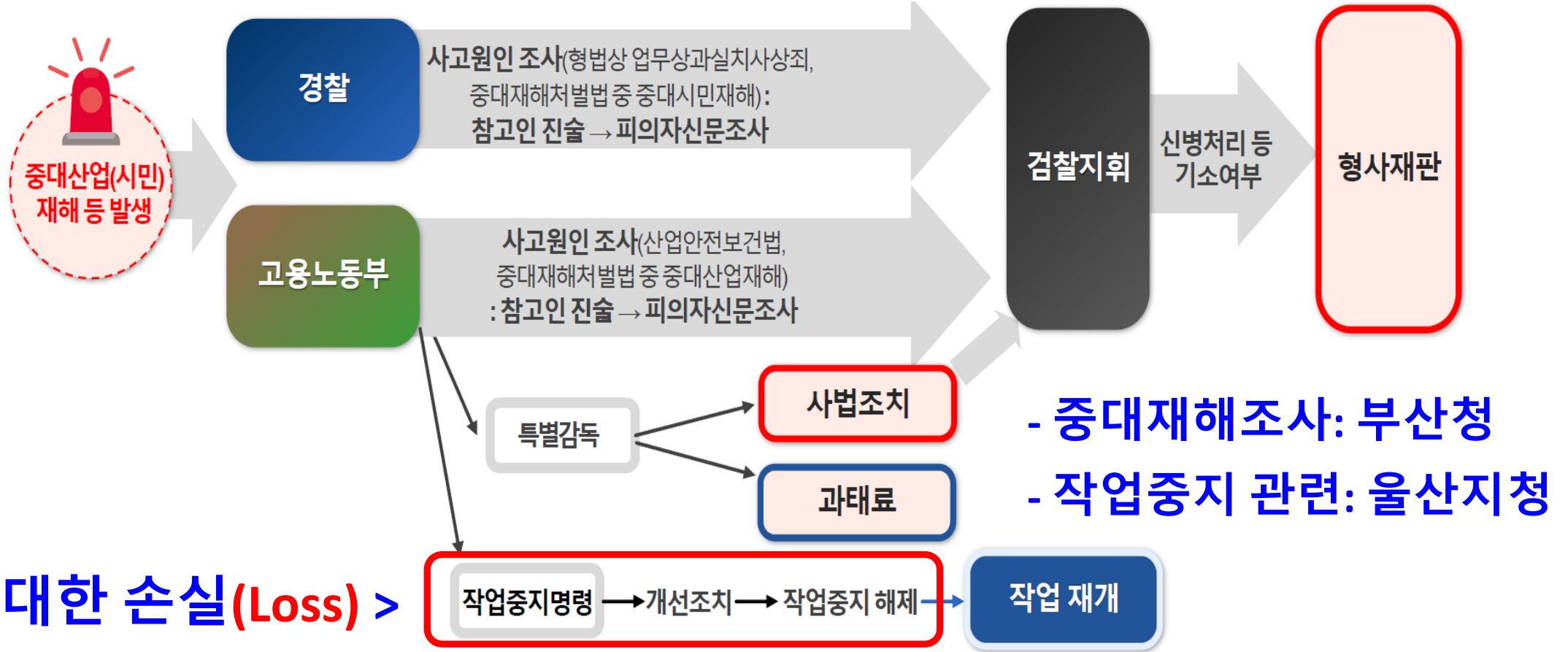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지적 등 벌칙성 관리와 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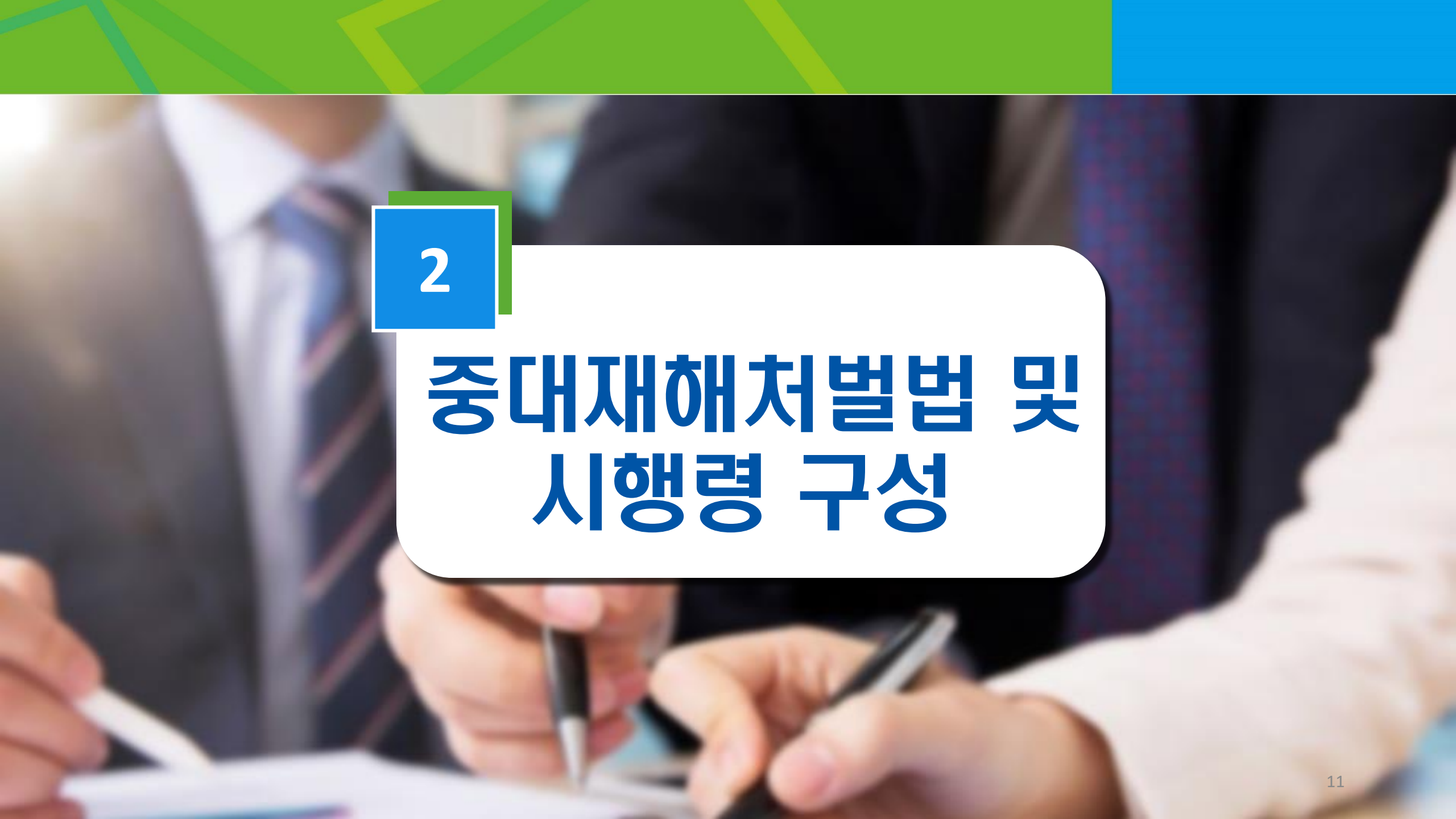


즉, 경영책임자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를 하듯이
안전도 경영의 일부라는 인식하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라는 취지

중대재해 발생 시 진행 흐름

+





2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구성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

총 4장, 16 조문

제1장 총칙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4장 보칙

조문		법률 내용	시행령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 직업성 질병 범위(제2조) - 공중이용시설 범위(제3조)
제2장 중대 산업 재해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제4조)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제5조)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제7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제8조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안전보건교육 이수(제6조)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 제2장 중대산업재해_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 제2장 중대산업재해_제3조[적용범위]

'24.1.27.부터는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

< 근로기준법 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text{상시근로자 수} = \frac{\text{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text{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 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등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도급·용역·위탁 등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주요 내용

❖ 제2장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제17조: 안전관리자, 제18조: 보건관리자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22조: 산업보건의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주요 내용

❖ 제2장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의 핵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주요 내용

2-2-다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을 위한 업무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점검 의무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68.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개선에 갈음한 위험성평가의 주기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경비, 단시간미화원 등)에 최초 위험성평가 후 1년에 1회 정기평가를 실시한다면(다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한 적이 없고, 유해위험요인의 변화가 없음)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는 정기평가뿐만 아니라 수시평가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실시하여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중대법 질의회시집 (2023. 5.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주요 내용

❖ 제2장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위험성평가에서 도출된 高유해·위험요인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주요 내용

❖ 제2장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주요 내용

❖ 제2장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사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 참석자 대부분 비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주요 내용

❖ 제2장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제17조: 안전관리자, 제18조: 보건관리자,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22조: 산업보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주요 내용

❖ 제2장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주요 내용

❖ 제2장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대상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준하는 노사간담회, 회의 등 개최]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제64조(협의체) 1개월 이상 공사, 제75조(노사협의체)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공사(150억원 이상 토목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주요 내용

❖ 제2장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비상조치훈련(소방훈련)과 연계, 연간 비상훈련계획에 반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주요 내용

❖ 제2장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주요 내용

❖ 제2장 제5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

-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연구원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법 등
- (시설) 전기안전관리법, 시설물 안전관리법, 소방안전관리법, 승강기안전관리법 등
-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법(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주요 내용

❖ 제2장 제5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포함 내용 확인)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이행 관리에 관한 사항, 제일 중요]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중대법 시행령상의 반기 1회 이상 점검, 7가지 의무

제4조제3호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

제4조제5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제4조제7호

-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

제4조제8호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뉴얼을 마련하고,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제4조제9호

-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제5조제1호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제5조제3호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경영책임자는 전담조직 등을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필요한 조치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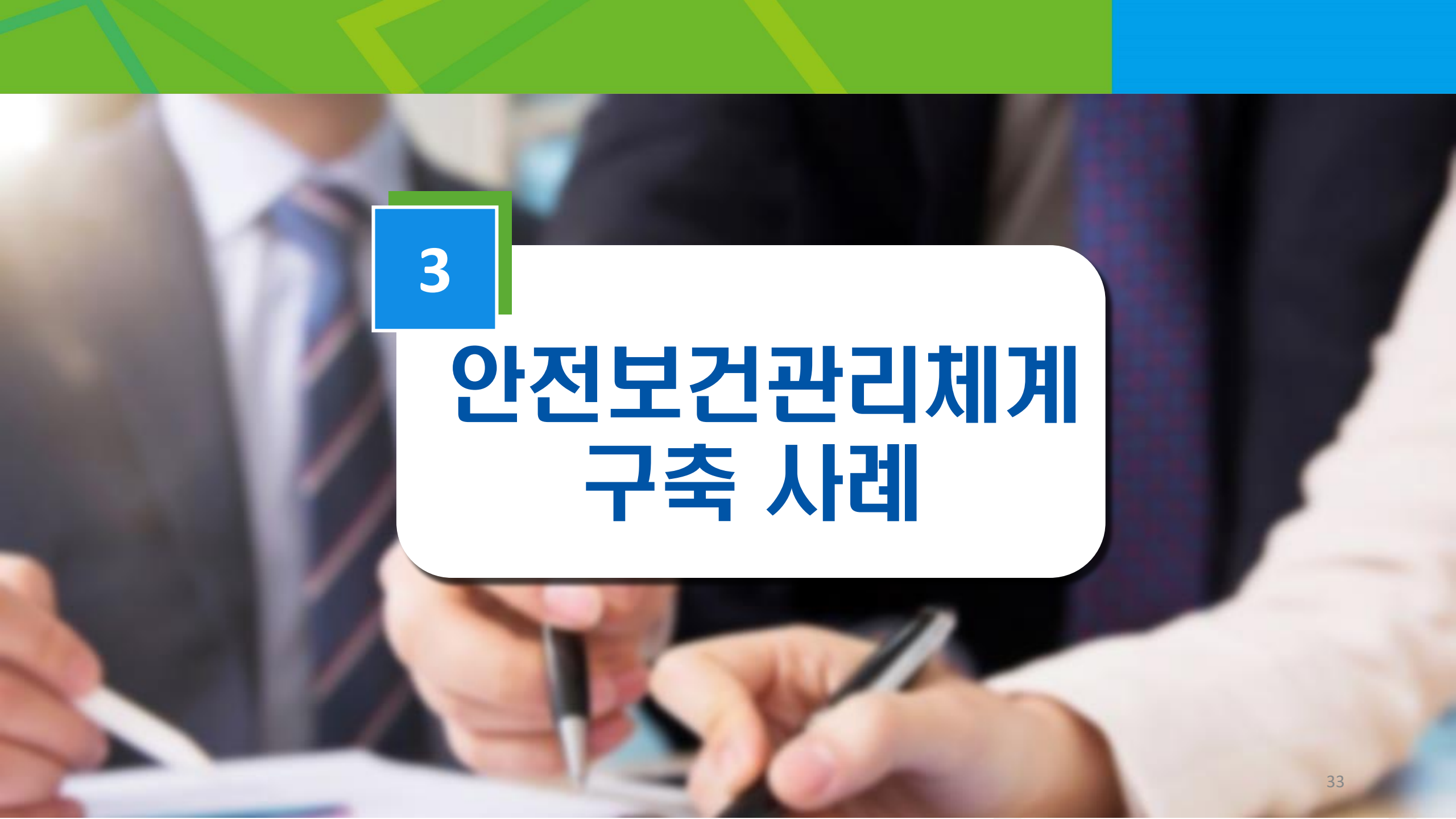
상반기 점검 의무는

6월 30일까지

하반기는 12월 31일까지

이행, 위반사항 즉시 개선

⇒ 기한 준수 어려움
(미리 미리)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례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제4조 1호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추진계획(예시)

[붙임 1] 공단 안전보건목표

'22년 안전경영 추진체계도 [예시]

비전	국민과 임직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의 일터 조성
목표	임직원, 협력업체 및 발주공사 근로자, 공단 방문 국민 총상해 재해 'Zero'

추진 전략	- 중대위험으로부터 임직원 및 공단 방문 국민 보호 - 협력업체 및 발주공사 3대 고위험 사고 예방활동 강화
-------	---

분야	전략
1. 사업수행 현장	①-1 자률 안전보건경영체계 운영 내실화 지침 ①-2 위험성평가 현장 적용률 강화 실안법 지침 ①-3 사업수행 직원 안전보건활동 강화 지침 규정
2. 건설현장	②-1 공단 발주공사 전수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②-2 공단 발주공사 단계별 감독 및 모니터링 강화 실안법 규정
3. 시설물	③-1 산재위험시설 안전점검 강화 중재법 지침 ③-2 연구실 안전점검 강화 지침 규정
4. 재난안전관리	④-1 재난성 재해 대비 대응체계 구축·운영 중재법 ④-2 '단계적 일상회복' 대비 상시 대응체계 구축·운영
5. 기타 안전관리	⑤-1 직원 안전보건 역량 강화 지침 규정 ⑤-2 협력업체 안전관리 지침 규정 ⑤-3 대국민 안전의식 확산 실안법
6. 점검 및 개선	⑥-1 경영진이 참여하는 안전점검 강화 지침 ⑥-2 근로자, 전문가 참여 위원회 운영 지침 ⑥-3 자체 안전보건활동 수준평가 실시 및 완류 지침

지침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실안법** 산업안전보건법 **중재법** 중대재해처벌법 **규정** 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붙임 2]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 추진계획서 양식(예시)

추진사항	목표	추진방법	일정	실적 (%)	성과 평가	담당 부서
기관 특성화활동	1회	기관 특성에 맞는 사고 예방활동	연중		계량 측정	각 부서
위험성 평가	정기	변경사항, 현장 위험요인 반영 평가 실시 - 기관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	연중		계량 측정	각 부서
	수시	재해발생 내용 등에 대해 수시 평가 실시	연중		-	각 부서
안전보건 교육	신규 직원	입사기관 배치 후 3개월 미만 신규직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실적 관리(기록제 포함)	연중		계량 측정	각 부서
	직원	월례조회 또는 부서별 실시 및 실적 관리	연중		-	해당 부서
	특별 교육	16시간	연중		-	해당 부서
	MSDS	발생시	연중		-	해당 부서
안전점검	취약 시기별	2회 장마철, 동절기 등 취약시기 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연계(2회, 기관장) ※ 항고, 장시간 비어있는 공간 점검	7.11월		-	주무 부서
	매월	1회/월 안전동 시범실, 격리동 시범실, 가스시설	연중		-	담당 부서
발주공사 안전관리	연중	발주공사 안전관리 방안 준수 발주·계약 부서에서 안전감독자 지정하여 안전점검 등 관리감독 철저	-		절차 준수	각 부서
중대산업재해 대비 대응 매뉴얼 마련	1회	대응조직, 직원, 공사 근로자 Case별 예방절차, 숙지를 위한 교육 실시 등 반영	3~4월		계량 측정	주무 부서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절차 마련	1회	대응조직, 내방객(교육생) Case 업무처리절차, 숙지를 위한 교육 실시 등 반영	3~4월		-	-

◆ 안전보건경영방침 작성(예시)

0000는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 경영책임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경영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2.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5.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6.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알도록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처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7.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8.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2023년 00 월 00 일

0000 대표이사 (서명)

※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판결문(4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은 매년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계획인 데 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각 부문에서 항상 고려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적인 경영철학과 의사결정의 일반적인 지침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 등이 반영되어야 하고, 대응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관한 것 등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업계에서 통용되는 표준적인 양식을 별다른 수정 없이 활용하는 데 그치거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명목상의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유해 ·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등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예시]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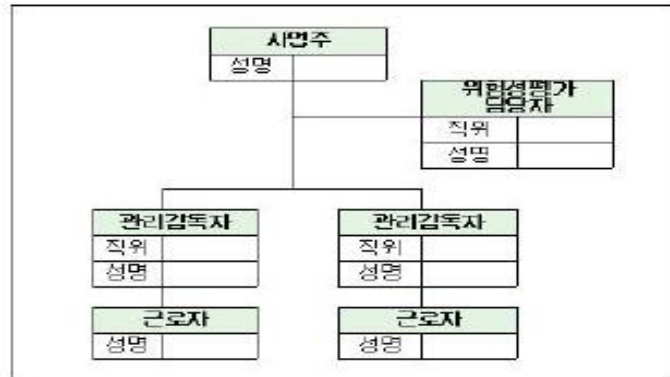
승 인		단위사업장 대표
기 안		위험성평가 담당
사업장명(단위사업장명) : ○○ (주) (○○공정)	제 정 : (처음 만든 날짜)	
문서번호 :	개 정 : (수정한 날짜)	

제1조(목적) 이 실시규정은 우리 회사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실시규정은 우리 회사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 설비 및 공정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조직의 구성) 위험성평가 조직의 구성은 <표 1> 과 같이 한다.

<표 1> 위험성평가 조직



■ 발굴한 위험요인에 대해 유형별로 분류하여 기록 · 관리

■ 제거, 대체, 공학적통제, 행정적통제, 보호구 순으로 대책마련

◆ 위험성수준 3단계 판단법 위험성평가[예시]

연 번	공정명	위험성평가		평가일시 : '22-03-10		
	원자재 입고	위험성 (상, 중, 하)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1	무자격자가 지게차를 임의 운전하여 근로자와 부딪힐 위험	☐ 상 ☒ 중 ☐ 하	1. 지게차 키를 자격자에 한하여 별도 보관 조치 2. 지게차 키 보관함을 제작	'22-05-25	'22-03-25	박 안 전
2	크레인으로 물건을 올리던 중 벨트가 이탈되어 물건이 떨어 질 위험	☒ 상 ☐ 중 ☐ 하	1. 후크해지장치(결속)의 기능을 정상화 2. 슬링벨트 손상여부 확인 후 손상이 과도한 벨트는 즉시 폐기조치	'22-05-30		홍 길 동
3	난간이 없는 계단을 이용하던 중 축전으로 추락 위험	☐ 상 ☒ 중 ☐ 하	1. 계단 내 안전난간을 설치 2. 난간에 설치되지 전까지 이용 금지	'22-03-30	'22-03-25	이 용 봉
4	화물차량 이동 중 근로자와 부딪힐 위험	☐ 상 ☒ 중 ☐ 하	1. 화물차량 이동경로 내 근로자의 접근 을 금지하는 조치 2. 근로자 보행통로 내 헬스 설치	'22-04-30		황 건 설
5	작업장 내 먼지발생으로 인한 호흡기 건강 위험	☐ 상 ☐ 중 ☒ 하	-	-	-	-

4. 안전보건예산 편성 및 집행

4호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

◆ 연간 안전보건 예산계획[예시]

단위(천원)				
항목	주요내용	전년도	금년도	비고
안전보건 인건비	- 안전보건관리 업무 위탁비용 등	3,000	4,000	
안전보건 시설·장치비	- 방호장치 구입비 - 보호구 구입비 - 방호울 설치비 - 안전난간 설치비 - 기타 안전장구류 구입비	30,000	40,000	
안전보건 점검비	- 절단기, 용접기 등의 안전장치 점검비용 - 지게차, 크레인 안전점검비용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비 - 안전보건 진단비	15,000	20,000	
보건관리비	- 근로자 건강진단비(특수) - 작업환경측정비용 - 작업환경 개선설비 비용 - MSDS 경고표지 등	10,000	12,000	
안전보건 교육비	- 채용 시 교육 - 정기 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교육비 - 특별안전보건교육	7,000	8,000	
안전문화 활동	- 아차사고 발굴 포상 - 안전제안제도 운영비 - 안전세미나, 회의비 - 팀별 TBM 활동비	5,000	6,000	
합 계		70,000	90,000	

※ 안전·보건 예산이 편성되어있어도 예산이 용도에 맞게 집행 되지 않았다면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음(재판부 판단)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권한 부여 등

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권한·예산 부여 및 업무수행 평가
(반기1회)

◆ 관리감독자 지정서(예시)[권한]

관리감독자 지정서

1. 선임자

- 소 속 :
- 직 책 :
- 성 명 :

2. 수행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에 따른 업무
 - 1)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6) 위험성평가에 관한 업무 중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귀하를 〇〇〇〇〇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로 지정합니다.

2020. . .

대표이사 (직인)

본인 확인: 본인은 〇〇〇〇〇의 〇〇부서에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임을 확인합니다.

2020. . .

성명 (서명)

◆ 안전보건 예산 편성 요청서(예시)[예산]

안전보건 예산 편성 요청서		작성자	
		부서명	
		직 무	
		작성일자	
예산편성 요청내용			
사유			
사진 (첨부)			
검토결과			

검토자 : (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및 평가표(예시)

평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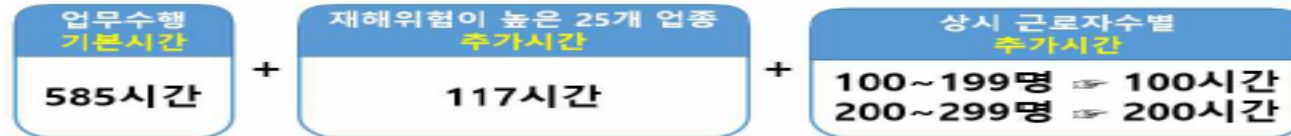
양호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수립된 안전보건목표를 달성하고 재해예방에 기여함
보통	법령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함
미흡	법령에 따른 업무를 일부 수행하지 않음

평가표

직책	성명	담당업무	평가		
			미흡	보통	양호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1.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산안법 제29조)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관리 감독자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6.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시간 보장

6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 수행시간 보장 (업무일지)



[재해위험이 높은 25개 업종]

대업종	중업종	소업종
광업	석회석·금속·비금속·기타광업	석회석(백운석, 대리석포함)광업
		금속광업
제조업	목재 및 종이제품제조업	쇄석채취업
		기타광물채굴·채취업
	기계기구·금속·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섬유판제조업
		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
		석회제조업
		석재및석공품제조업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배관공사용부속품제조업
		법랑철기및프레스가공제조업
		철강재제조업
		제강압연업
		철강및합금철제품제조업
		철강또는비철 금속주물제조업
		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
		시멘트제조업
		비철금속의제련또는정련업
건설업	금속 제련업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지류가공제품제조업
		건축건설공사
운수·창고 및 통신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기타건설공사
		소형화물운수업
		퀵서비스업
기타의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항만운송부대사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7.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7호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 마련 후 점검 (반기 1회)

■ 근로자 참여절차 운영

◆ 안전신고제도 절차[예시]



◆ 안전제안제도 절차[예시]



◆ 안전제안제도 양식[예시]

제안표				제안일자	
제안자		확인자 (회사작성)			
제안사유					
제안효과					
이하 회사 작성					
담당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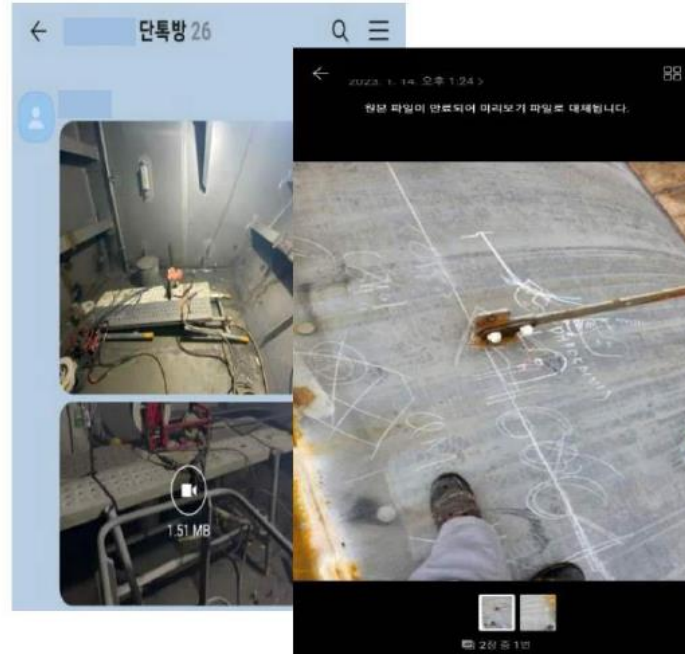
◆ 안전제안 조치 결과 관리[예시]

(/분기) 종사자 의견 청취 내용 및 조치 결과

일시	제시한 의견	검토결과	조치결과	조치일자
22.6.5	중량물 이송용 대차의 주행레일 충돌 사고 위험	주행레일 양끝부분에 완충장치 또는 경지기구 설치	주행레일 양끝부분에 완충장치 설치완료	22.6.30

◆ 근로자 의견 청취[예시1]

근로자와 채널 관리자 1:1 채팅을 통한 현장 위험요인 신고 및 개선 제안하는 시스템 구축/운영



◆ 근로자 의견 청취[예시2]



8. 중대산업재해 매뉴얼 마련 후 점검

8호 중대산업재해 발생 위험 대비 매뉴얼 마련 후 점검 (반기 1회)

◆ 비상조치 매뉴얼[예시]

비상시 조치 매뉴얼(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예시)

1. 목적

본 지침은 (주) ○○제조 사업장의 비상사태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조치하여 재해의 확산을 차단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본 지침은 충돌, 끼임, 질식, 화재, 폭발, 누출 등 안전보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및 화재진압 등의 비상대응 활동이 필요한 상황에 적용한다.
(1)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중대한 화재·폭발·누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미약 유사한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경우

3. 비상대응 내용과 조직 및 업무

비상 시 대응을 위해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장비 보유현황을 확인해야 하며,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을 준비한다. 비상사태 발생 시 인원 구조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원장(사업주, 공정장, 간사(안전팀장), 대응조장(생산부서장) 및 조원(직원)으로 구성된 사업장 비상사태 대응조직을 구성하여 비상사태에 대응한다.
(1) 위원장은 비상시 안전보건조치 및 대응에 필요한 총괄지휘를 담당한다.
(2) 간사는 유관기관 긴급구조 요청, 2차 피해방지 조치를 실시한다.
(3) 대응조장은 작업중지, 근로자대피 및 긴급구조, 출원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조원은 조장 등의 지시에 따라 신속한 대피, 가동중단 업무를 담당한다.

4. 비상사태 대응훈련

(1) 경영책임자는 매년 사업장 비상조치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2) 사업장 비상사태 대응훈련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한다. 훈련은 사업장에 발생가능성이 높은 중대재해 중심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한다.
(3) 경영책임자는 교육·훈련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5. 불이익 차분 금지

합리적인 사유로 작업중지 및 대피 등을 한 종사자에 대하여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6. 작업중지 및 대피

(1) 작업중지
① 종사자는 작업 중 약전류, 화재·폭발, 충돌, 질식, 함몰, 충돌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주위 작업자에게 알리야 한다.
② ①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한 종사자는 자체없이 비상경보기 작동 등 가능한 경보조치를 취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후 관리감독자 등에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피 및 위험요인 제거
① 종사자 등 누구든지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처한 경우에는 즉시 대피하여야 한다.
② 급박한 위험이 아닌 경우에는 주위 작업자에게 알리고 피해 확산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3) 구조조치
① 중대재해를 목격한 자는 신속히 주위 작업자 등에게 사고발생사실을 알리고,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중대재해 목격자나 목격자로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통보받은 자는 즉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신고하여 응급원차 이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등은 사망자의 부상을 후송하고 그 결과를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행정관청에 협조

종사자는 화재진압, 재해조사 등을 위하여 소방서, 노동관서, 경찰관서의 임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첨부: 1. 비상사태별 시나리오, 2. 비상훈련 실시 보고서, 3. 비상조치장

■ 재해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 목록화

◆ 추락사고 대응 시나리오[예시]

시간 및 상황	조치사항	담당	비고
00:00~00:01 추락사고 발생 /환자 발생	- 비계에서 고소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직원이 추락 - 사내 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00:01~00:06 환자 구조	- 동료 직원 등이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출혈이 심하면 지혈하고, 쇼크를 막기 위해 담요 등으로 보온 조치		
119 구조대 신고	119 구조대에 추락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환자 응급조치	- 골절이 있으면 그 부위를 부목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 - 외상이 있으면 소독 및 필요한 연고 약을 상처에 바르고 거즈 또는 붕대로 상처부위를 보호 119 구조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시 지원 2차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에 출입 통제하고 표지판을 게시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00:06~00:10 상황 보고	- 관계기관 등 상황 보고 "△△공장입니다. 비계에서 고소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직원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9 구조대에 구조를 요청하고 현재 직원이 외상 임시 치료 및 심폐소생술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현장 보존	- 현장 보존 조치 - 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재해 발생 원인 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을 보존		
00:10~ 환자 병원 후송	119 구조대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		

※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질의회시

8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른 점검 이행 방법

질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의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 하는지'를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 하지 않은 경우, 가상상황을 구성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한 경우만 조치한 것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해당 매뉴얼에 대한 직원교육 등도 조치한 것에 해당하는지?

회시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 8호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등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시행령 제4조제8호 각 목에 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등의 내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해당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율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질의 내용과 같이 가상상황을 구성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원교육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매뉴얼로 마련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하여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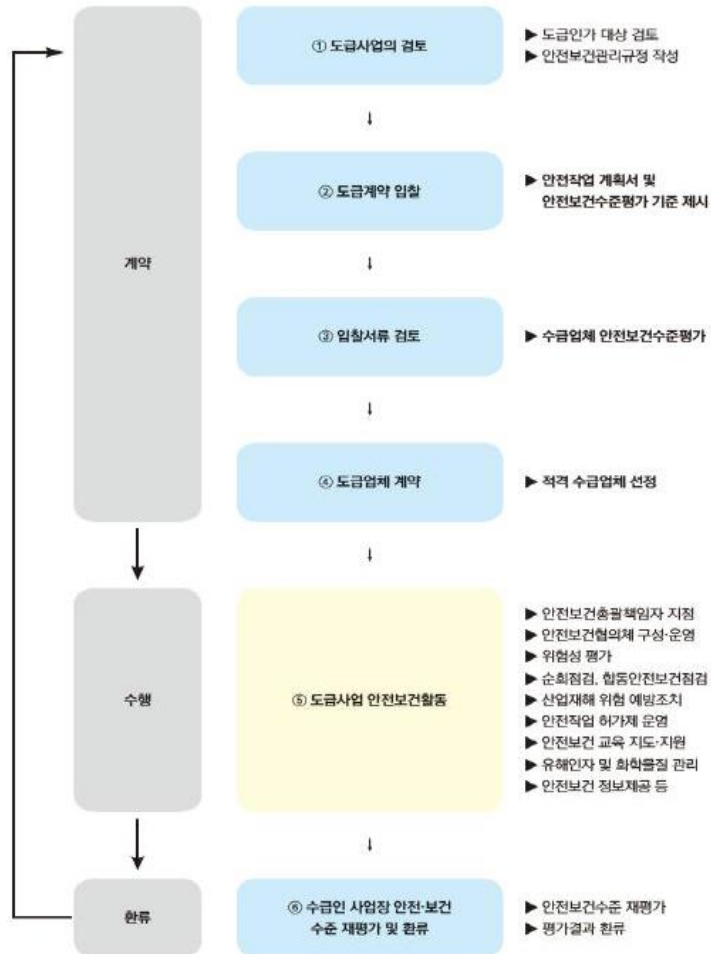
- 또한 형식적으로 조치·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의무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 하여 실질적으로 재해예방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임

9. 도급, 용역, 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9호 도급, 용역, 위탁 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반기 1회)

■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절차 수립

◆ 도급·용역·위탁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 활동[예시]



◆ 도급·용역·위탁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예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특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조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공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질의회시

90.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수급인에 대한 평가 주기

질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당사는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안전보건역량 진단표*에 의하여 수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 9가지 항목(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참여,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능력과 기술역량 평가, 안전보건 관리비용, 공사 도급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으로 구성되어 점수 기준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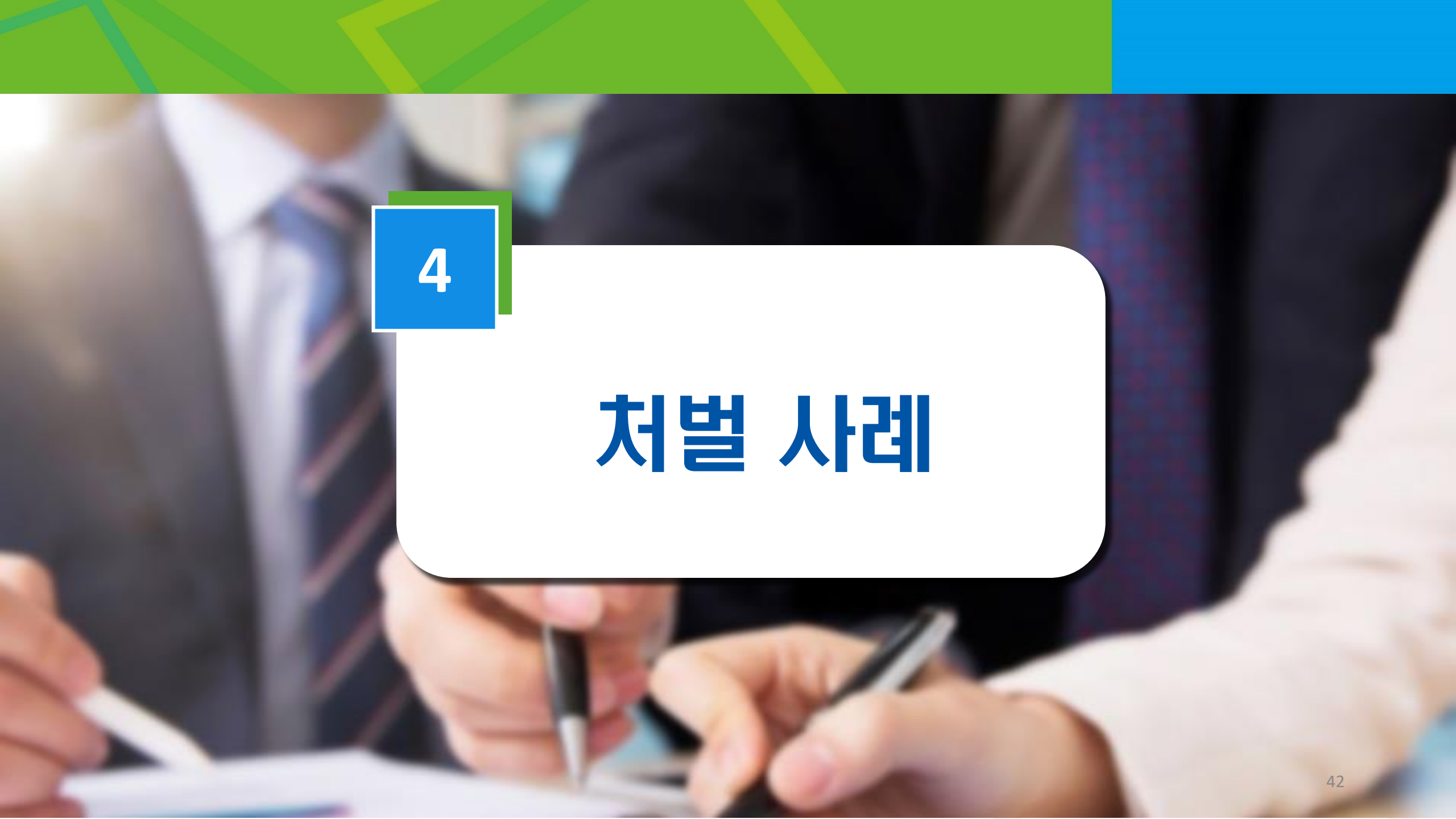
- 수급업체에 대한 최초 평가 결과를 당사 시스템상 등록·관리하고 계속 갱신·유지되면 계속 유효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유효기간을 얼마의 기간으로 보는지?

- 수급업체에 따라 계약기간이 2~3년 등으로 체결되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수급업체 평가를 매년 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3년이 지나 재계약 시점이 도래하였을 때 평가하여야 하는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각 목의 기준과 절차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특성, 규모, 개별 업무의 내용과 속성, 장소 등 구체적 사정이 다르므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와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따라서, 귀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9호에 따라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귀사의 사업 특성 등에 따라 “도급·용역·위탁을 받는 자(수급인)”의 평가 주기, 평가 결과의 유효기간* 역시 자유롭게 정하여 운영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시행령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의무와 다음

The background of the slide features a blurred image of several people in business attire, including suits and ties, who appear to be in a meeting or signing documents. A green and blue geometric pattern is visible in the top left corner.

4

처벌 사례

처벌 사례

세계일보

사회



1월 2일 (화)



뉴스

정치

사회

문화

전국

피플

오피니언

연재물 [선학평화상](#) [환경](#) [드론](#) | [Q](#)

일반

[검찰·법원](#)

[노동·복지](#)

[환경·날씨](#)

[교통·항공](#)

[교육·학교](#)

[사건사고](#)

중대재해법 시행 2년...사업주 12명에 평균 '징역 12.3개월' 선고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4-01-01 09:36:56 | 수정 : 2024-01-01 09:39:19



가

노동자가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으면 사업주를 강하게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음 달이면 시행 2년을 맞는다. 지금까지 사업주 12명이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한 번 이상의 법원 판단을 받았다.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업주는 1명에 그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올해 4월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건에 대한 '1호 판결'을 내렸다. 하청노동자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까지 12호 판결이 나왔고 유일하게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사업주(2호 사건)는 지난 28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1심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2건이 있다.

오피니언



[설왕설래] 세계 인구 80억명 시대
일찌감치 인구 규모와 출산율을 격...



[채희창칼럼] 국정원이 간첩 수...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는 미국...



[기자가만난세상] '오늘을 버티...
연말연시를 총총히 채운 송년회와 ...



[장은수의이책만은꼭] 삶의 주인...
새해가 시작됐다. 고난이 거듭되고 ...

HOT뉴스

처벌 사례

■ 중처법 판결 현황

순번	업종	사고유형	사업장명	선고
1	건설	떨어짐	oo파트너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2	제조	끼임	oo제강	징역 1년 (대법원 확정)
3	건설	맞음	oo건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4	건설	끼임	oo건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5	건설	맞음	oo건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6	서비스	떨어짐	oo산업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7	건설	끼임	oo건설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8	제조	급성중독	oo산업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9	제조	베임	oo철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10	건설	끼임	oo건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1	건설	떨어짐	oo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	건설	끼임	oo건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처벌 사례

■ 주요 위반 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처리 현황 (2023. 3. 31.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노동청 기소의견 송치 : 34건(2022. 12. 31.기준)
(내사종결 : 18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검찰 기소 : 14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검찰 불기소 : 1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법원 선고 : 1건(유죄)(2023. 4. 6.)



출처: 법무법인 율촌

처벌 사례

■ 주요 위반 사항

의무위반 유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시 이슈

- ✓ 안전·보건 경영방침 마련 (시행령4조1호): OO산업개발, OO건설, OO종합건설, OO생활관공사
- ✓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시행령4조2호): OO공업, 경북성주OO공사
-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 (시행령4조3호): OO산업, OO산업개발, 고양 요양병원 증축공사, 고양상가 신축공사, OO, OO건설, OO공업, 경북성주OO공사, OO산업, OO생활관공사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시행령4조5호 나목): OO산업, OO산업개발, OO에스앤씨, OO제강, 고양 요양병원 증축공사, 고양상가 신축공사, OO, OO건설, OO종합건설, OO건설, OO생활관공사
- ✓ 법정 인원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배치 (시행령4조6호): OO공업
- ✓ 종사자 의견 청취·개선방안 마련 (시행령4조7호): OO에스앤씨, OO생활관공사
- ✓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 마련 (시행령4조8호): 고양 요양병원 증축공사, OO, OO종합건설, OO산업, OO생활관공사
- ✓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마련 (시행령4조9호 가목): OO제강, 고양상가신축공사
- ✓ 하도급업자 안전보건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마련 (시행령4조9호 나목): OO에스앤씨
- ✓ 하도급업체의 안전보건확보조치 준수여부 판단기준과 절차 마련 (시행령4조9호 다목): OO산업개발
- ✓ 반기 1회 점검, 보고에 따라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시행령 5조 2항 2호): OO

5

안전관리 대응전략

안전관리 대응전략

❖ 2가지 관점에서 접근 필요

- ▶ (서류) 사업장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관리 [이제는 해야 할 시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적 요구]
- ▶ (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작동성 강화 [중대재해 발생 안 하는 것이 최선, 결국 위험성평가!!]

안전관리 대응전략

❖ [서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법에서 요구한 것들 하나씩 해 나가야 함

[시행시기 유예? 기다리지 말고 하나씩 챙겨야 함. 現在 활동과 연계 자료는 많이 있음(노동부, 우리 공단, 구글링, 유튜브 등)]

▶ 도급인에 준해서 안전관리 해야 함

[도급인 vs. 발주자 ?? 고민하지 말고 도급인에 준해서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제66조, 특히 제64조!!)]

안전관리 대응전략

❖ [서류] 체계구축 참고자료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중대산업재해 관련 -



2023-산업안전실-172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공단)」

매뉴얼

2023. 4.



www.mael.go.kr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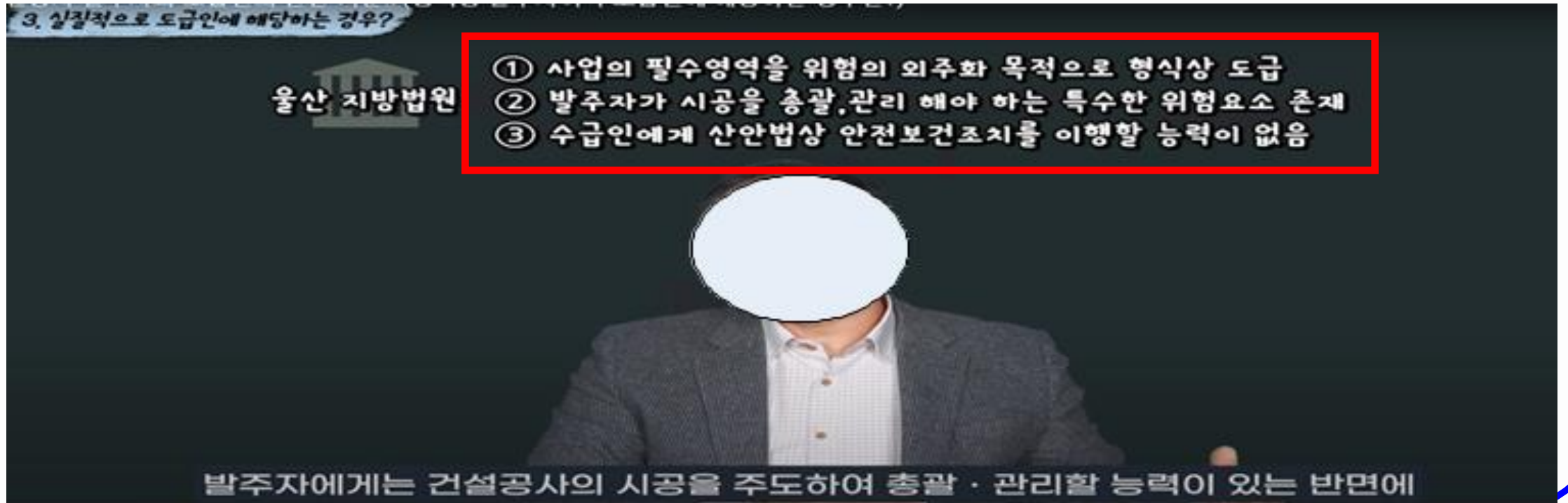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2023. 5.



안전관리 대응전략

❖ [서류] 도급인 Vs. 발주자 구분 ⇒ 도급인에 준해 관리

- ◆ 울산법원 판례 참조: 선박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지붕공사 시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해 검사는 도급인으로 보고 기소했으나, 법원에서는 건설 발주자로 보고 처리(시공을 총괄 주도하지 않은 자로 봄)



안전관리 대응전략

❖ 주요 재해사례

- ▶ 청소 중 미끄러져 넘어짐, 계단 넘어짐 등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 이동식 사다리 작업, 고소작업 중 떨어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
- ▶ 달비계 작업 중 떨어짐!!
[작업 종료시까지 도급인(원청) 상주 필요!!]

안전관리 대응전략

❖ 넘어짐 사고



청소 중 뒤로 넘어짐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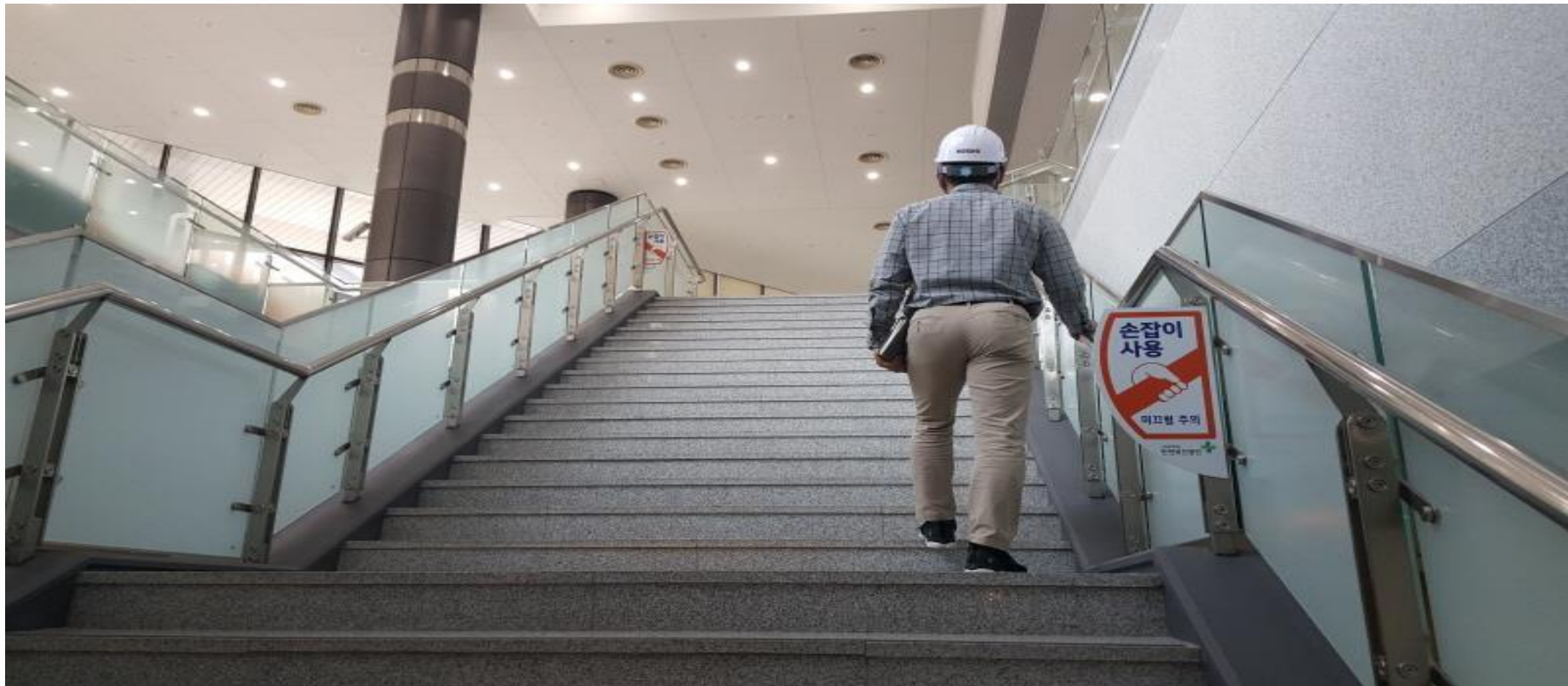
안전관리 대응전략

❖ 넘어짐 사고



안전관리 대응전략

❖ 넘어짐 사고



안전관리 대응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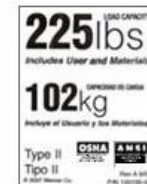
❖ 떨어짐 사고



고소작업! 안전모는 꼭 착용하자. 56

안전관리 대응전략

❖ 떨어짐 사고



안전관리 대응전략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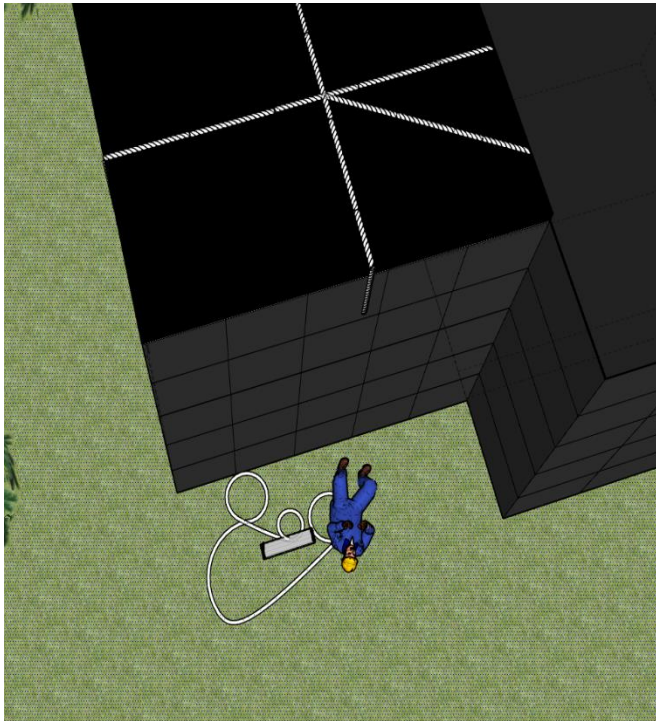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안전관리 대응전략

❖ 달비계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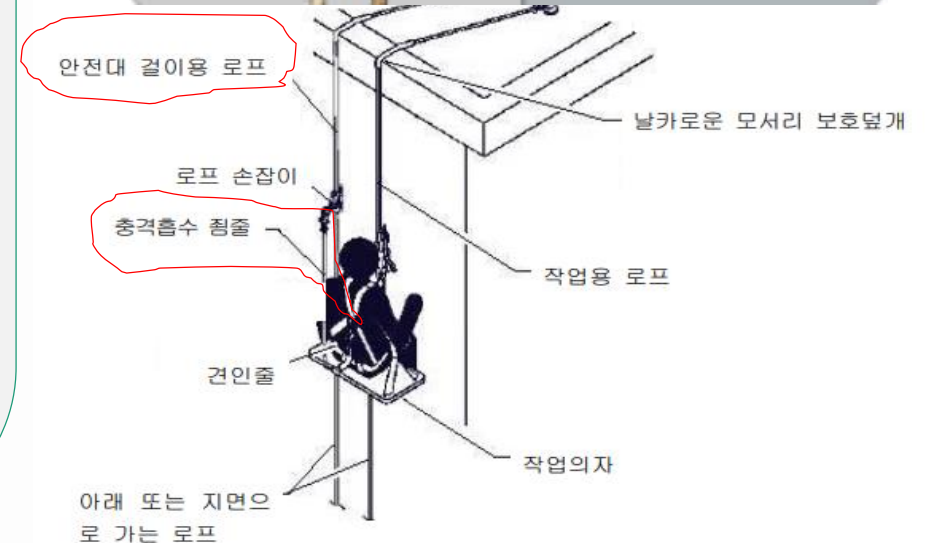
회사 유리창 청소 위해 달비계를 타고 작업중 달비계 로프(PP, 18mm)가 끊어지면서 약 8m 아래로 추락 사망



안전관리 대응전략

❖ 달비계 사고

- ✓ 달비계 작업대는 견고한 구조
- ✓ 작업대 모서리는 4개 로프 연결로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 ✓ 작업용 섬유로프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 또는 철재 구조물 등 2개 이상의 고정점에 결속
- ✓ 근로자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섬유로프, 구명줄 및 고정점 사용
- ✓ 섬유로프 또는 구명줄에 작업중 경고표지
- ✓ 로프에 방호덮개 씌우기
- ✓ 구명줄 설치 및 근로자 안전대 착용과 안전대를 구명줄에 체결



안전관리 대응전략

달비계 안전작업 점검표

순번	평가문항	평가결과		
		개선필요	보통	우수
1	작업 전 로프의 상태를 점검하였는가?			
2	올바른 로프 매듭요령을 숙지하였는가?			
3	로프 접촉부에 보호대를 설치하였는가?			
4	2개소 이상의 지지물에 로프에 접속하였는가?			
5	로프 지지물에 대한 사전 안전성 점검에 실시하였는가?			
6	구명줄을 설치하였는가?			
7	안전모.안전대(추락방지대)를 지급 및 착용하였는가?			
8	무리한 스윙(Swing) 작업을 금지하고 있는가?			
9	비, 바람 등 기상 상태는 적정한가?			
10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가?			
11	옥상과 지상에 각각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였는가?			
12	작업 장소 하부 출입금지 조치를 실시하였는가?			

* 현장 상황에 맞게 내용 조정 필요

발주자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법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5조제6항제6호)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법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5조제6항제6의2호)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17.〉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2. 8. 16.〉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	제89조의2(기술지도계약서 등) ①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의 지도계약서는 별지 제 10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0조 및 영 별표 18 제4호나목4)의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는 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8. 18.]

부산청 관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현황

기관명	주소명	전화번호	우편번호	지정관서	기관명	주소명	전화번호	우편번호	지정관서
산업안전관리(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길 31-7 (범서읍) (581-3번지)	052-267-7438	44933	부 산 청	주식회사가온건설안전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2번길 5 (사파동, 드림캐슬빌딩) 601호	055-716-8777	51448	부 산 청
(주)옥토건설안전기술원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616번길 19 5층	051-341-0842	46505	부 산 청	대농안전지도사사무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앙로 299, 5층(하단동, 도암빌딩) (하단동 605-35)	051-961-4183	49428	부 산 청
(주)동양건설안전기술단	경상남도 진주시 동부로169번길 12 19층 1907호 (윙스타워 8동) (129-31번지 1층)	055-757-5594	52818	부 산 청	(사)대한산업안전협회부산지역본부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199번길 15 현대타워오피스텔 8층 (전포동) (690-4번지 현대타워오피스텔 8층)	051-804-5454	47297	부 산 청
(주)한국안전기술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점촌2길 5 (범서읍, 황금프라자 빌딩) 802호	052-223-2129	44924	부 산 청	(주)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안전기술원 동부사업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62 3층(초량동,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초량동 1169-13)	051-462-6710	48731	부 산 청
한국건설안전기술(주)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53번길 45 (대연동) (89-5번지)	051-611-3244	48438	부 산 청	주식회사태영안전기술단	경남 진주시 동부로169번길 12 (충무공동, B동 1304호) (69-3번지 B동 1304호)	055-762-1287	52818	부 산 청
(주)서경건설안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4번길 7 602호 (상남동) (5-3 성경상가 602호)	055-287-0210	51495	부 산 청	세이프웨이 안전기술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000-13 (남산동, 1층) (남산동 118-13)	휴대전화-9361-4929	46216	부 산 청
(주)영남재해예방연구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고북로 200 (사직동) (203-15번지 영주빌딩 5층)	051-504-9141	47832	부 산 청	제임스안전지도사 종합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덕의길 11 (금산면 장사리, 진주푸르지오2단지) 203-201 (금산면 장사리 964-1)	055-762-2493	52627	부 산 청
(주)미래건설안전컨설팅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56 (상남동, 양지빌딩) 304-2	055-263-6391	51504	부 산 청	제일안전지도사 사무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변영로 365 (하단동, 가락타운1단지) 146동 2층 204호 (하단동 1161-2)	051-294-0868	49305	부 산 청
삼한건설안전 (주)	경남 진주시 돛골로13번길 22 4층 (상평동, H5빌딩) (244-11번지 H5빌딩 4층)	055-756-3488	52814	부 산 청	김영건설안전기술원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서길 22 (북정동, 새롬성원네오파트상가), 201호 (북정동 884-2)	휴대전화-3044-6193	50572	부 산 청
한국건설지원단(주)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20 (충무공동) 3층 (1180번지)	055-762-9225	52854	부 산 청	한국안전원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03 (구포동, 구포현대아파트) 상가동 3층 305호	051-316-5678	46651	부 산 청
한국안전 (주)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1로 112-1 (만덕동)	051-316-0300	46553	부 산 청	주식회사국민안전기술단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50 (덕포동) 4층	051-710-9787	46945	부 산 청
주식회사태평양안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469번길 190 (우동, 센텀현대아파트상가) 304호	051-743-7088	48063	부 산 청	더원안전지도사 사무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명동길 12 (지내리 1257-1) (지내리 1257-1)	052-245-8948	44903	부 산 청
(주)부산안전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 22 (모라동, 부산벤처타워) 1316호	051-714-2898	46918	부 산 청	렌트브레인 안전경영연구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357번길 5-1 (중동, 코스모시티오피스텔) 1910호 (중동 1267-3)	휴대전화-2841-4639	48096	부 산 청
주식회사한국전기통신안전	부산 강서구 유통단지1로 41 3153-1 101동 203호	051-927-1100	46721	부 산 청	대한건설안전주식회사	경남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601 2층	휴대전화-9809-4070	52834	부 산 청
성우안전기술단(주)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299 5층 (하단동, 도암빌딩) (605-35번지 도암빌딩 5층)	051-527-2550	49428	부 산 청	대승안전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1793번길 50 (부곡동, 금정빌딩) 301호 (부곡동 64-46)	051-518-9223	46274	부 산 청

소규모 사업장 건강디딤돌(특수건강진단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공동주택의 경비 및 청소원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 지원금액 : 특수건강진단 비용의 90% 지원

일시대상(2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01조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 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신청·접수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찾는 메뉴”
▶ 건강디딤돌】



신청 기간

- 수시신청
- 「건강 디딤돌」 사업 공고일 이전에 '24년도 측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라 신청을 마감할 경우 홈페이지 별도 공지 예정

* 공단 문의처 : 052-226-0528
(울산지역본부 건설보건부)

감사합니다.

설비는 고장 나고, 사람은 실수하여 반복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잠깐 관심 갖고 집중하면 사고는 줄일 수 있겠지만, 예전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여전히 발생합니다. (특히 고소작업 추락사고 기인물)

대부분의 사고는 생산성을 위해 안전장치 해제, 불안전 행동을 묵인한 결과입니다.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관리로 무재해 사업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